

인천지방법원 2022. 6. 23 선고 2021가단28268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

담당변호사 시정기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2. 6. 9.

판 결 선 고 2022. 6. 23.

## 주 문

1.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 인천 계양구 E, 1 내지 4층(1층 F식당, 2층 G식당, 3층 H식당, 4층 I식당) 소매점 영업에 관하여 2019. 5. 3.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을 67,037,6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67,037,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0,37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

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

### 3. 일부 기각하는 부분

원고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,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,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,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(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),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.

판사 이호동

별지